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91

발의연월일: 2022. 6. 22.

발 의 자:최종윤·강선우·김승남

남인순 · 신영대 · 인재근

정일영 · 조승래 · 최기상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구강관리용품은 「구강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, 세부제품 등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음.

이에, 제품 안전관리 및 기준·규격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, 영업 진입장벽이 나 기준·규격 등 규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위생용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,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·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아울러, '어린이 칫솔'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

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(안 부칙 제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4)를 5)로 하고, 같은 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구강관리용품: 구강위생 확보,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 적으로 제조된 칫솔, 치실, 설태제거기(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강관리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호라목4)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(선적일 기 준)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.

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위생용품"이란 보건위생을	1
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	
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	
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	
을 말한다.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기타 위생용품	라
1) ~ 3) (생 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) 구강관리용품 : 구강위생
	확보,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
	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
	<u>솔, 치실, 설태제거기(혀에</u>
	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
	<u>사용하는 것)</u>
<u>4)</u> (생 략)	<u>5)</u> (현행 4)와 같음)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